

# 오리 표준계약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2769]

[2013. 8. 26]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관련  
농식품부장관 권장사항**

오리 계열화사업자인\_\_\_\_\_ (이하 “갑”이라 한다)와 오리 사육농가인\_\_\_\_\_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오리 계열화사업 사육계약을 체결한다.

## 제1조 (목적)

“갑”과 “을”은 계열화사업 동반자 입장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여 원가를 절감시키고, 위생적인 고품질 오리고기를 생산·유통시킴으로써 계약당사자의 이익 증대는 물론 안정적인 오리 산업발전과 국민보건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권리와 의무)

① “갑”은 “을”이 오리를 사육하는데 필요한 새끼 오리, 사료 등 사육자재를 “을”이 지정하는 장소까지 원활하게 공급하여야 하며,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계열화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고시한 사육자재의 품질 기준 및 품질표시(고시가 없는 경우, 개별 계약서에 명시한 품질기준 및 품질표시)에 관한 자료를 항시 비치하여 “을”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을”은 “갑”이 “을”에게 공급한 사육자재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③ “을”은 오리 사육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과 도구를 위생적이고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고 “갑”으로부터 사육에 필요한 사육자재를 공급받아 사육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④ “을”은 “갑”과 계약 생산한 오리 전량을 “갑”에게 출하하여야 하며, “갑”은 “을”에게 붙임 기준에 의거 사육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⑤ “을”은 “갑”과의 계약기간동안 “갑”이외의 제3인과 오리 사육에 관한 계약을 할 수 없으며 “갑”으로부터 공급받은 사육자재는 “갑”의 오리 사육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제3조 (사양관리)

- ① “갑”은 사양 및 질병관리 전문 지도요원을 확보하고, 정기적으로 “을”의 농장을 방문하고 새로운 정보제공과 기술 및 경영관리를 지도하여야 하며, 사양관리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을”에게 수시로 제공하여야 한다.
- ② “갑”이 “을”의 농장을 방문할 때에는 방역상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갑”은 “을”의 방역상 필요한 요구에 대하여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 ③ “을”은 “갑”이 제공하는 사양관리기록부를 성

## » 축산법령

실하게 작성하여 오리 출하 시마다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육중인 오리가 질병 등 이상 징후를 보일 경우 지체 없이 “갑”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갑”은 천재지변, 법정전염병, 출하일정변경 등의 긴급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을”에게 통보하여 대비하도록 한다.

### 제4조 (계약기간)

- ① 계약농가로서 계약기간은 계약일부터 1년으로 한다.
- ② “갑”과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을 위한 서면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갑” 또는 “을”이 계약종료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 제5조 (축사 기본 사육시설 및 사육 기준)

“을”은 「계열화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고시한 사육시설에 관한 사항, 「축산법」 등 관련 법령 또는 고시가 정하는 수준의 사육시설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6조 (사육마릿수 및 회전수)

- ① 사육마릿수는 현재의 시설로서 1회 공급 시에 수를 기준으로 하되, 사육환경이나 계절에 따라서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공급 마릿수를 조절한다.

- ② 사육마릿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③ 연간 사육 회전수는 오리 5~7회전의 범위 내에서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 기준으로 하되, 국내 오리고기 수급 상황에 따라서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 (사육자재의 공급과 품질)

- ① “갑”은 계열화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고시한 사육자재의 품질기준 및 품질표시(고시가 없는 경우 개별 계약서에 명시한다)에 적합한 새끼오리, 사료 등을 “을”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이 때 새끼오리를 생산한 종오리는 78주령 이하의 종오리 이어야 한다.
- ② “갑”은 “을”에게 공급하는 새끼오리의 품종, 새끼오리를 생산한 부화장, 해당 종란을 생산한 종오리장 및 종오리의 주령을 명시한 송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을”은 “갑”이 공급한 사료의 품질 상태 및 중량을 확인한 후 인수증을 사료공급업체에게 송부하고 “갑”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갑”은 새끼오리 사육에 필요한약품, 연료 등 사육자재를 불임의 기준에 의하여 “을”에게 사육경비를 정산 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현물로 공급할 수 있다.
- ⑤ “갑”과 “을”은 매년 1회 이상 물가 상승, 사육자재 수급상황 및 경영성과 등을 고려하여 사육경비를 합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부칙에 명시할

수 있다.

- ⑥ “갑”과 “을”이 합의하여 사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육경비의 항목을 신설 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제8조 (병아리(새끼오리) 입식)**

- ① “을”은 오리 출하 후 축사 내 외부 보수 및 물청소와 철저한 소독을 실시 하여 각종 유해세균 번식을 차단하여야 하며, 빠른 기간 내에 입식 준비를 완료하고 이를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공급일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갑”은 새끼오리 공급을 부당 하게 지연시키지 않아야 한다. 다만, “을”이 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갑”은 “을”이 이를 시정 또는 조치할 때까지 새끼오리 공급을 유보시키고, 계획된 공급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갑”이 공급하는 새끼오리가 “을”의 농장에 도착하면 “을”은 지체 없이 새끼오리의 수량(덤 3% 포함) 및 품질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갑”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을”이 확인한 이후의 부족한 새끼오리 수량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④ 공급받은 새끼오리의 품질 불량으로 판단되는 폐사가 발생하면 “을”은 이를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급받은 후 7일 이내에 폐사 원인이 새끼오리 품질 불량으로 확인되면 공급 일로부터 7일 이전까지는 덤(3%)을 초과한 폐사 수량을 공급 마릿수에서 차감한다. 7일 이후에

발생한 폐사가 불량 새끼오리 공급으로 인한 경우에는 “갑”이 이를 보상하나 폐사의 원인에 대해서 이견이 존재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진단을 통해 보상여부와 그 범위는 분쟁기관을 통해 상호 협의한다.

- ⑤ 폐사 원인이 새끼오리 품질 불량 때문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갑”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쌍방이 인정하는 정밀진단기관의 정밀진단결과를 적용하되 진단을 위한 소요비용은 쌍방이 똑같이 부담한다.
- ⑥ 새끼오리의 질병 감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문기관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 ⑦ 단, 폐사 공제를 목적으로 “을”이 고의로 폐사 마릿수를 실제보다 그 이상으로 보고했다고 인정될 경우 “갑”은 본 계약서 제1조 및 제2조에 의거 그 귀책사유를 무시한다.

**제9조 (사양 및 기록관리)**

- ① 계약사육 기간 중 “을”은 “갑”의 오리만을 사육하여야 하며, “갑”이 제공 하는 사양관리 프로그램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갑”은 “을”의 사양관리를 지도하고, “을”은 오리 사육 도중 이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방역 및 위생관리)**

- ① “갑”은 농가별 사육환경이나 지역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방역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을”에게 제시하고, 백신접종 등 방역지도

## » 축산법령

를 하여야 하며 “을”은 그 방역 프로그램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을”의 농장입구에는 소독시설을 설치하여 각종 차량과 외부인의 진입 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차량 및 외부인 출입을 금지시키고, 불필요하게 축사 내부를 개방하지 않는다.
- ③ “을”이 사육하여 “갑”에게 출하한 오리에 항생제 및 항균물질 등의 잔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오리에 약품을 투여해서는 안 된다. 다만, 질병치료 등 특별한 경우에는 반드시 “갑”의 감독에 따라야 한다.
- ④ “갑”과 상의 없이 “을”이 사용한 항생 및 항균 잔류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검출되어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을”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제11조 (폐사 및 사고 처리)

폐사 및 사고처리에 관한 사항은 부칙으로 정한다.

### 제12조 (오리 출하)

- ① 출하 예정일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잠정 결정하고, 최종 출하일은 “갑”이 결정하여 “을”에게 통보한다. 다만, 오리의 성장속도 및 “갑” 또는 “을”의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② 출하중량은 평균체중을 협의하여 결정하고

“갑”의 필요에 따라서 출하 평균체중을 조정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이나 질병으로 인한 사고가 우려될 시에는 “갑”의 판단 하에 출하체중 범위에 관계없이 출하할 수 있다.

- ③ “을”은 수시로 중량을 측정하여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출하 시 중량 측정은 “을”의 책임 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출하 평균중량이 통보된 중량 대비  $\pm 50g$  이상 오차가 발생할 때에는 “갑”은 출하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출하차량 회차 시 “갑”은 “을”에게 회차비용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불임의 기준에 따른 사료요구율과 육성율에 대한 보상 및 생산지수 등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④ “을”은 사료낭비를 막고, 도축 시 발생하는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며, 도축 과정 중 세균 오염방지를 위하여 출하차량에 오리를 상차하기 시작할 시점 3시간 전에는 사료급여를 중단한다. 이를 어김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 ⑤ “을”이 사육 불량으로 이상이 있는 오리를 출하시킴으로써 도축 후 도체에 흉부 수종이나 훼손 등(이하 등외품이라 한다)이 확인되어 판매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피해가 발생한 오리의 수에 출하시의 평균체중을 적용한 금액을 사육경비에서 공제할 수 있다.
- 다만 등외품 판정에 대하여 이의제기할 수 있다. 이때, 전문기관의 진단 또는 분쟁조정기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제13조 (상차 및 운송)**

① 오리 출하 시 운송은 “갑”의 책임으로 하며, “을”은 사육농장까지 차량 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진입로를 정비하여야 한다. 진입로 정비 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오리의 상차는 “갑”의 비용으로 하되 상차과정에서 발생한 오리의 훼손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출하 시 “을”은 농장에서 빠른 시간 내에 상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감독하여야 한다.

③ “을”의 사육불량으로 이상이 있는 오리를 출하시켰을 때 도축 후 도체에 흉부 수종이 있거나 심한 도체손상 등으로 상품가치가 없어 판매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이 사실을 통보하고, 발생한 마릿수에 출하시의 평균체중을 적용한 중량을 공제할 수 있으며 오리 출하 후 도축 이전에 발생한 폐사축은 인정하지 않는다.

④ “을”이 “갑”과 계약된 상차반을 이용하여 출하 작업을 하였을 때는 “갑”은 사육경비 정산 시 상차비를 선공제후 사육경비를 지급한다

**제14조 (출하중량 계근 및 출하마릿수)**

① 출하 시 계근은 “갑”의 계근 시설을 이용하여 “갑”의 부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을”의 요구에 의하여 농장 인근 공인계량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근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② “을”의 요구에 의하여 공인계량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갑”의 계근 시설에서도 중량을 측정하여

“갑”과 “을”이 측정한 중량의 평균치를 출하중량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오차가 클 경우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출하마릿수는 농장에서 상차 시 확인된 마릿수로 한다.

**제15조 (기준 육성을 등)**

기준육성률, 기준 사료요구율 산정방식 및 구체적인 평가방식 및 사육경비 지급 내역·금액은 부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사육경비 지급)**

① “갑”은 최종 출하일로부터 25영업일 이내에 사육경비를 정산하여 “을”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25영업일이 경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계열화법 제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이 별도로 제공하는 사양기록일지 등을 성실하게 작성하여 출하 후 3일 이내에 반드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사육자재의 임의 처분금지)**

① “을”은 “갑”이 공급한 새끼오리, 사료 등 사육자재와 이를 사용하여 사육한 오리를 타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② “을”이 제1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을”은 민사 및 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한 “갑”의 손실에 대하여 “을”은 사고발생 확인일 기준 오

## » 축산법령

리가격(한국오리협회 발표자료 적용)의 2배를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 제18조 (기한이익상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을”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갑”에 대한 채무 잔액을 일시에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1. “을”이 본 계약서상의 각 조항을 고의로 위반하였을 경우
2. “을”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

② 이 때 “갑”은 “을”의 동의 없이 “을”의 농장에 진입하여 축사 시설물을 이용, 출하작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을”은 “갑”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19조 (계약 위반에 대한 조치)

“을”이 “갑”과 사전 협의 없이 타 새끼오리를 임의로 공급받거나 “갑”의 새끼 오리 공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에 이 계약은 자동 해지되고, “을”은 1회전 공급 계약마릿수에 해당하는 새끼오리 대금의 2배를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이때 병아리(새끼오리) 가격은 수당 원을 기준으로 한다.

### 제20조 (담보 등)

“갑”과 “을”은 계약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담보물이 부족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입보나 은행의 지급보증, 보증보험사의 보증, 또는 농

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신용보증사의 보증 등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연대보증인의 자격은 “갑”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 제21조 (비용의 부담)

다음 각 호의 해당 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을”과 “을”의 연대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갑”의 채권, 담보권 등의 권리행사 보전에 관한 비용
2. 담보목적물의 조사, 추심, 처분에 관한 비용
3. 담보권의 설정, 변경, 말소의 등기등록에 관한 비용
4. 채무이행 지체에 따른 독촉 및 통지 비용

### 제22조 (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갑”과 “을”은 14일전 최고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의 사양관리 부실 또는 태만으로 인하여 2회 이상 연속하여 사육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2. “갑” 또는 “을”이 계약 이행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갑”과 “을”은 상호 합의하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을”은 “갑”이 공급하는 새끼오리가 2회 이상 불량으로 인하여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을”은 “갑”에게 해약을 통보할 수 있다.

### 제23조 (관할법원)

이 약관의 해석과 이에 근거한 계약에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 단, “갑”과 “을”이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4조 (조문의 해석)**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다른 법령과 상충되는 조항 또는 문구의 해석이 모호한 경우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하여 처리하되 계열화법 등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준한다.

**제25조 (계약내용의 변경)**

계약 내용의 변경 및 사유정산기준 내용의 변경 시 “갑”과 “을”은 변경된 내용을 정리한 문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함으로써 본 계약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26조 (기타)**

이 계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증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계열화사업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을”(사육 농가)

주 소 :  
상 호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